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62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김영배·한정애·김승원

이병진 • 문정복 • 송기헌

김태년 • 문금주 • 차지호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 여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4條(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	第54條(候補者辭退의 申告)
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選擧區選擧	
管理委員會에 가서 書面으로	
申告하되, 政黨推薦候補者가 辭	
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推薦政	
黨의 辭退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후보자의 사퇴는</u>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
	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